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10. 18 선고 2022가단52697 판결 [사해행위취소]

##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은식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선, 강지인

변 론 종 결 2024. 9. 27.

판 결 선 고 2024. 10.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3.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홍등기소 2021. 5. 3.

접수 제98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2. 17. C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전라남도 고흥군 D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공사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나. C는 2020. 5. 중순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다. 원고는 C에게 2019. 12. 17.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5. 3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공사대금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1. 4. 26. C를 상대로 C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위변제금 35,787,480원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147,560,061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16553)를 제기하였고, 이에 C는 원고를 상대로 공사잔금 50,000,000원과 추가공사비용 44,511,4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26014)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C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18,267,2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하는 판결을 2023. 3. 28. 선고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4. 7. 25.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4,832,668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44,590,668원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나머지 공사대금 39,75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3나75514(본소), 2023나75521(반소)].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바. C는 2021. 5. 3. 피고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1. 5. 3.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0호증, 제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는 원고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

### 나. 판단

####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4,832,668원의 지급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지급채권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2020년 5월경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2021. 5. 3.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2) 사해행위

을 제4호증의 기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순천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2021. 5. 3.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4,832,668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채무 이외에 2,531,170원의 조세채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료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의 고흥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2020년식 승합형승용자동차(카니발) 외 2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선 인정사실만으로는 C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가현

별지